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45
----------	------------

제안연월일 : 2026년 3월 1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4조는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인원의 범위와 임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신설).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개정안 과 같음) <u>제2조(경과조치) 이 조</u> <u>례 시행 당시 종전</u> <u>의 규정에 따라 위</u> <u>촉된 청렴시민감사</u> <u>관은 이 조례에 따</u> <u>라 위촉된 것으로</u> <u>본다. 단, 그 임기는</u> <u>종전의 임기 만료일</u> <u>까지로 한다.</u></p>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지한”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제4조제1항 중 “두 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로, “있고,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규정에 따른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과 제2항”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보고) 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중전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및 자격) ① <u>청렴시민감사관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분한다.</u></p> <p>1. <u>상근직 : 직무수행을 위해 상시 근무가 필요하여 시간선택제임 기제공무원 등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감이 임용한 사람</u></p> <p>2. <u>비상근직 : 직무수행을 위해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개모집 또는 시의회·시민단체·전문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u></p> <p>② <u>청렴시민감사관은 회계, 법률, 시설, 학사, 정보화 등의 분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u></p> <p>1. <u>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u></p> <p>2. <u>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u></p> <p>3. <u>관련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u></p>	<p>제3조(구성 및 자격) <삭 제></p> <p>① ----- <u>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계-----</u> ----- -----.</p> <p>1. ----- <u>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u></p> <p>2. <u>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u></p> <p>3.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u></p>

협이 있는 사람

4.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생 략)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감사 역량과 실적 평가를 통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규정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5조(직무 및 지위) ① (생 략)
② 청렴시민감사관 중 상근직은 제1항의 직무 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직무 및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
----- 1
회에 한하여 -----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직무 및 지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1. 공익제보의 통합처리(접수·조사 포함)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공익 제보 사항의 분석처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및 고충민원의 조사·중재 및 조정 업무

4.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5.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업무

6.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상 감사 규정」에 따른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에 따른 계약심사 업무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생략)

<신설>

제10조·제11조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보고) 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 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신 설>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렴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
촉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중전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